201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2015-52

제출년월일: 2015년 10월 일 제 출 자: 강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 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2,627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

○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금12,627천원

○ 산출기초: 20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84,177,343천원의 1만분의 1.5

○ 출연시기 및 방법: 2016. 3월중 현금출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관계 법 령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 (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제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 제1 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제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